|  |
| --- |
| 전형료 반환신청서(「고등교육법」제34조의4 제4항) |
|  **원서 접수번호 :** |  **접수일자 : 2023. . .** |
| **지원자** | **성** **명** |  | **본인 연락처** |  |
| **보호자 연락처** |  |
| **생 년 월 일** |  |
| **모 집 단 위** |  대학(원) 계열/학부/과 전공 |
| **전 형 구 분** |  □ 지역균형전형 □ 일반전형  |
| **반환 요청 사유** |  □ 착오과납 □ 대학 귀책사유 □ 천재지변 □ 지원자의 입원ㆍ사망  |
| **반환 계좌 정보** |
| **금융기관명** |  | **계좌주명** |  |
| **계좌번호** |  | **계좌주와의 관계** |  |
|  **위 반환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합니다.** **2023년 월 일****지원자 : (서명 또는 인)** **보호자 : (서명 또는 인)**  **서울대학교 총장 귀하** |
|  |
| **첨부서류** |  **1. 반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** **2. 증빙서류 ▢ 의료기관 입원확인서** **▢ 기타( )** |
|  **[입학전형료 반환 안내]** 「고등교육법」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※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 ※ 원서접수(인터넷 접수 포함)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※ 반환 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. |